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. 1. 12 선고 2016가단3068 판결 [토지인도 및 무허가건물철거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12. 15.

판결 선고 2017. 1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충남 논산시 C 대 37㎡ 및 D 대 112㎡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중 선내 1 ~ 5,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02㎡를 철거하고, 그 대지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충남 논산시 C 대 37m² 및 D 대 112m²의 소유자인데, 피고는 위 대지를 침범하여 지어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위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침범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김병국

별지